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호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*761-4205 /팩스*782-6659
담당부서 : 국제협력팀 담당부서장 : 김경옥 부장 담당자 : 조안나 대리 e-mail: ancho12@kcia.or.kr

대한장협 : 제6-167호

시행일자: 2022. 06. 19.

수 신: 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: 원료목록 보고 담당자

제 목 :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(시행 '22.6.19.)에 따라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일부개정고시(2022.4.27. 개정, 2022.6.19. 시행)한 바 있습니다.

3. 개정된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에 의거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시 작성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변경 대상 : 화장비누 (고체 형태의 세안비누), 린스 유형의 제품

※ 화장비누, 린스를 제외한 화장품 : 기존 화장품 유형 약어 유지

나. 변경 적용 시기 : 2022년 6월 19일부터 적용

1) 신규 원료목록 보고 제품 : 2022년 6월 19일부터 적용

2) 기존에 화장비누 또는 린스로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 : 2022년 6월 19일~2022년 12월까지 개정된 화장품 유형 약어로 변경

다. 변경 내용 : 화장비누, 린스

1) 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 : 다3 → 다3-1

2) 린스 : 아8 → 아1

변경 전		변경 후	
다3	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	다3	액체 비누
		다3-1	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
아8	샴푸, 린스	아1	헤어 컨디셔너, 린스 , 트리트먼트, 팩
		아8	샴푸

※ 국내 제조하는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는 반드시 붙임의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를 기준으로 보고하셔야 반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 : 조안나 (Tel: 02-761-4205 e-mail : ancho12@kcia.or.kr)

붙임 :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